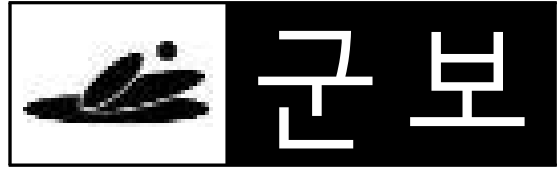


예산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관의 장
람	

제543호 2019. 7. 15.(월)

조 례

- 예산군 조례 제2532호 : 예산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1

고 시

- 예산군 고시 제2019 - 84호 : 응봉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4
- 예산군 고시 제2019 - 85호 : 대술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(일반지구) 기본계획 승인 고시 9
- 예산군 고시 제2019 - 86호 :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13

입법예고

- 예산군 공고 제2019 - 1040호 : 예산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및 예산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16

회									
람									

제25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에서 의결·이송된 예산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

2019년 7월 15일

예산군 조례 제2532호

예산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통안전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고령운전자”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예산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군민의 책무)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.

제5조(교통안전 교육 등)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
2.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
3.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

제6조(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)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용 표준형 실버마크 “스마일 실버”를 제작·지원 할 수 있다.

제7조(재정지원 등)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제1종 면허 : 10만원
2. 제2종 면허 : 10만원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1. 제안이유

-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코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해당 조례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군수와 군민의 책무 (안 제3조, 제4조)
- 다. 교통안전 교육 등 (안 제5조)
- 라.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(안 제6조)
- 마. 자진반납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 (안 제7조)

예산군고시 제 2019 - 84호

응봉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
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라 응봉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 지형도면은 「토지이용규제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. 07. 03.

예 산 군 수

1. 사업의 명칭 : 응봉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조성사업
 2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대한광통신(주) 대표 박 하 영
 3. 사업의 목적 및 개요
 - 가. 사업의 목적 : 신·재생에너지설비설치를 위한 주요유치업종변경
 - 나. 사업의 개요 : 대한광통신(주) 신·재생에너지설비(태양광발전시설)설치
 4.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
 - 가. 위 치 :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지식리 517번지 일원
 - 나. 면 적 : 150,697.9㎡ 실시계획개발면적 : 32,864.7㎡
 5. 사업시행기간 : 2019. 07. 03 ~ 2020. 07. 31
 6.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
 - 각 호의 사항 : 붙임과 같음
 7. 지형도면 : 게재 생략(1/1,200 지적도)
 8. 기타사항
 - 지형도면은 예산군 경제과(041-339-7274)에 비치·열람토록하고,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에 등재한다.
- 붙 임 : 예산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 1부.

예산군 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, 군 계획시설) 결정(변경)조서

1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군 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1) 가. 용도지역

가) ■ 결정(변경) 조서-변경없음

구 분	면적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150,697.9	-	150,697.9	100.0	
계획관리지역	150,697.9	-	150,697.9	100.0	

2) 나 용도지구

가) ■ 결정(변경) 조서-변경없음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4	응봉농공단지 개발진흥지구	산업개발 진흥지구	응봉면 지식리 523번지 일원	150,697.9	-	150,697.9	'93.03.29	

2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3)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

가) ■ 결정(변경) 조서-변경없음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4	응봉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	응봉면 지식리 523번지 일원	150,697.9	-	150,697.9	'93.03.29	

3.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조서가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

나) 1) 토지이용계획

다) ■ 결정(변경) 조서-변경없음

구 분	면적(㎡)			구성비(%)	비 고	
	기정	변경	변경후			
합 계	150,697.9	-	150,697.9	100.0		
공 장 용 지	130,584.0	-	130,584.0	86.7		
공공 시설 용지	소 계	20,113.9	-	20,113.9	13.3	
	도 로 용 지	7,759.2	-	7,759.2	5.1	
	오폐수처리시설	3,183.5	-	3,183.5	2.1	
	공동이용시설	4,027.0	-	4,027.0	2.7	관리사무소
	수 도 시 설	3,214.6	-	3,214.6	2.1	정수장, 배수장
	기 타 시설	1,929.6	-	1,929.6	1.3	구거

라) 2) 도로

마) ■ 도로총괄(변경) 조서-변경없음

구분	합계			1류			2류			3류		
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
합계	582	7,759.2	2	146	1,646.2	1	112	1,115	1	324	4,998	
중로	324	4,998	-	-	-	-	-	-	1	324	4,998	
소로	258	2,761.2	2	146	1,646.2	1	112	1,115	-	-	-	

바) ■ 도로결정(변경) 조서-변경없음

구분	구 모				기 능	연장 (m)	기 점	중 점	사용형태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
기정	중로	3	4	14~15	집산도로	324	구역계	소로 1-8	일반도로	'93.03.29	
기정	소로	1	8	12~10	국지도로	65	중로 3-4	지석리 522	일반도로	'93.03.29	
기정	소로	1	9	11.5	국지도로	81	중로 3-4	지석리 522	일반도로	'93.03.29	
기정	소로	2	20	9~10	국지도로	112	중로 3-4	지석리 522	일반도로	'93.03.29	

4) 나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

가) 1) 가구 및 획지에 관한결정

나) ■ 결정(변경) 조서-변경없음

구분	도면 번호	가구 (획지) 번호	면적		획지						비고
			기정	변경	기정			변경			
					번호	위치	면적	번호	위치	면적	
공용 장지	A	A	130,584.0	130,584.0	①	지석리 518	32,864.7	①	지석리 518	32,864.7	
					②	지석리 520	7,494.7	②	지석리 520	7,494.7	
					③	지석리 521	12,238.4	③	지석리 521	12,238.4	
					④	지석리 522	33,040.2	④	지석리 522	33,040.2	
					⑤	지석리 523 지석리 523-2	29,265.0	⑤	지석리 523 지석리 523-2	29,265.0	
					⑥	지석리 524	15,681.0	⑥	지석리 524	15,681.0	
공시 용 공 설 지	B	B	4,027.0	4,027.0	①	지석리 517	4,027.0	①	지석리 517	4,027.0	
	C	C	3,183.5	3,183.5	②	지석리 516	3,183.5	②	지석리 516	3,183.5	
	D	D	3,214.6	3,214.6	-	지석리 519	3,214.6	-	지석리 519	3,214.6	

다) 2)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 관한결정

라) ■ 결정(변경) 조서-변경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	비 고	
A	A1~A6	용도	허용용도	기정	·『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	공장용지
				변경	·『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·『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·이용·보급촉진법』 시행규칙 제2조4호 나목의 태양광 설비시설	
			불허용도	기정	·허용용도 이외의 시설	
				변경	·허용용도 이외의 시설	
		건폐율	기정	70%이하		
			변경	70%이하		
		용적율	기정	150%이하		
			변경	150%이하		
B	B1	용도	허용용도	기정	·『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	공동이용 시설
				변경	·『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	
			불허용도	기정	·허용용도 이외의 시설	
				변경	·허용용도 이외의 시설	
		건폐율	기정	70%이하		
			변경	70%이하		
		용적율	기정	150%이하		
			변경	150%이하		
C	C1	용도	허용용도	기정	·오폐수처리시설	오폐수 처리시설
				변경	·오폐수처리시설	
			불허용도	기정	·허용용도 이외의 시설	
				변경	·허용용도 이외의 시설	
		건폐율	기정	70%이하		
			변경	70%이하		
		용적율	기정	150%이하		
			변경	150%이하		
D	D1	용도	허용용도	기정	·수도시설	수도시설
				변경	·수도시설	
			불허용도	기정	·허용용도 이외의 시설	
				변경	·허용용도 이외의 시설	
		건폐율	기정	70%이하		
			변경	70%이하		
		용적율	기정	150%이하		
			변경	150%이하		

※ 예산군 도시계획조례에 의거하여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로 조성하는 농공단지의 건폐율(70퍼센트 이하)을 적용

예산군 고시 제2019-85호

대술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(일반지구) 기본계획 승인 고시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우리군 대술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승인하고, 농어촌정비법 제58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7월 10일

예 산 군 수

1. 사업의 명칭 : 예산군 대술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
2. 사업의 목적 : 면 소재지를 경제·사회·문화적 기능을 갖춘 농산어촌지역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과 삶의 질 향상 도모
3. 사업비 : 5,817백만원(국비 4,072백만원, 지방비 1,745백만원) 자부담 34백만원 별도
4. 주요사업내용
 - 가. 위 치 : 충남 예산군 대술면 화천1리 일원
 - 나. 면 적 : 6,055ha(중심지189.6ha, 배후마을 5,865ha)
 - 다. 사업내용 : 대술하모니파크 조성, 대술복지회관 리모델링, 중심가로 정비, 마을경관 개선, 지역역량강화 등
5. 사업시행자 : 예산군수
6. 사업시행기간 : 2018년~2022년(5개년)
7. 기타사항 : 관계서류열람 (예산군청 건설교통과 ☎ 041-339-7662, 7664)

□ 연차별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, < > : 자부담별도)

기능별	세부공종	단위	수량	총 사업비	연차별					비고
					'18	'19	'20	'21	'22	
합 계				5,817 <34>	341	1,643	1,751	789 <34>	1,293	
기초 생활 기반 확충	소 계			3,336	189	1,264	1,389	-	494	
	대솔하모니파크 조성	㎡	부지 3,596 건축물 719	2,842	189	1,264	1,389	-	-	
	대솔복지회관 리모델링	㎡	498.02	494	-	-	-	-	494	
지역 경관 개선	소 계			852 <34>	-	-	-	494 <34>	358	
	중심가로 정비	식	1	535 <4>	-	-	-	494 <4>	41	
	마을경관 개선	식	1	317 <30>	-	-	-	- <30>	317	
지역 역량 강화	소 계			734	2	55	200	240	237	
	문화복지 프로그램	식	1	262	-	-	43	109	110	
	역량강화 프로그램	식	1	120	-	17	33	37	33	
	지역활성화 프로그램	식	1	234	-	9	95	65	65	
	마을경영지원	식	1	118	2	29	29	29	29	
부대 비용	소 계			895	150	324	162	55	204	
	기본계획수립비	식	1	185	140	45	-	-	-	
	세부설계비	%	3.47	115	-	115	-	-	-	
	공사감리비	%	7.71	308	-	91	97	45	75	
	사업관리비	%	1.44	65	-	19	20	10	16	
	잡지출	식	1	92	10	54	28	-	-	
	예비비	식	1	130	-	-	17	-	113	

□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

■ 대술하모니파크 조성

번호	토지소재지		지목	전체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비고
	주소	지번					
1	대술면 화천리	763-1	전	3,162	3,162	이예화	동의
2		766-3	전	320	9	충청남도	
3		767-5	잡종지	10	10	충청남도	
4		767	잡종지	395	395	대술번영회	동의
5		970	도로	456	20	국(건설교통부)	

■ 중심가로 정비

번호	토지소재지		지목	전체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비고
	주소	지번					
1	대술면 화천리	767	전	464	157	충청남도	
2		1004-1	도	675	57	국(농수산부)	
3		798-3	답	407	456	충청남도	
4		1005-1	도	1905	173	국(농수산부)	
5		807-4	답	490	300	충청남도	
6		808-2	답	776	384	충청남도	
7		1002-1	구	1451	24	국(농수산부)	
7		828-2	답	720	432	충청남도	
8		820-2	도	370	254	윤덕순	
9		970-2	도	29	10	국(건설교통부)	
10		821-2	도	519	51	윤덕순	
11		970-4	도	140	42	국(건설부)	
12		817-2	도	426	140	충청남도	
13		817-1	답	40	12	충청남도	
14		817-8	구	440	195	충청남도	
15		857-6	도	182	111	충청남도	
16		968-2	도	175	62	국(건설교통부)	
17		966-89	천	232	104	충청남도	
18		966-29	천	519	44	충청남도	
19		966-96	하	356	67	충청남도	
20	845-11	대	373	309	충청남도		

■ 중심가로 정비(계속)

번호	토지소재지		지목	전체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비고
	주소	지번					
21	대술면 화천리	845-12	답	24	12	충청남도	
22		966-92	하	141	103	충청남도	
23		966-1	천	57,180	412	국(건설부)	
24		857-5	답	140	47	예산군	
25		859-6	답	115	23	예산군	
26		966-14	천	2,672	2,672	국(건설부)	
27		966-90	하	482	209	충청남도	
28		966-91	하	209	125	충청남도	
29		966-93	하	207	123	충청남도	
30		966-95	하	146	114	충청남도	
31		966-94	하	208	106	충청남도	
32		766-8	전	151	118	충청남도	
33		766-3	전	320	220	충청남도	
34		970	도	456	293	국(건설교통부)	
35		764-1	전	8	8	박청순	
36		766-2	도	942	295	박원신	
37		766-11	전	124	124	충청남도	
38		767-6	전	178	110	충청남도	
39		966-60	천	10	10	충청남도	
40		966-111	대	120	66	예산군	
41		966-66	하	204	24	국(건설부)	
42		966-90	하	482	-	충청남도	

■ 마을경관 개선

번호	토지소재지		지목	전체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비고
	주소	지번					
1	대술면 화천리	243-1	구	16,306	307	농림부	
2		244-1	도	11,457	483	농림부	
3		960-2	구	1,327	123	농림부	
4		966-82	대	437	236	충청남도	

예산군 고시 제2019 - 86 호

도로명주소 개별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,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,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. 7. 5.

예 산 군 수

○ 도로명주소(신규)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부 여(고시)일	도로명주소 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		

○ 도로명주소(변경)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(변경 전)	도로명주소(변경 후)	도로명주소변 경일	변경사유
(별지참조)				

○ 도로명주소(폐지)

도로명주소(폐지)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사유
(별지참조)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(☎041-339-7193~4)으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사용합니다.

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

NO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일(고시일)	도로명주소 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비고
1	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 1032	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차동로 285-8	20190705	신축	20090825	예산군과 공주시 경계에 위치한 고개 이름 사용	
2	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94-6	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발연로 60-13	20190705	신축	20111206	행정구역명(발연리)을 이용하여 명명	
3	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94-7	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81-13	20190705	신축	20091113	도로 주변 벚꽃나무가 길게 심어져 있어 봄이면 만개하여 지역특색을 이용하여 명명	
4	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지석리 521	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응봉로 50-37	20190705	신축	20091113	응봉면의 중심도로로 지역적 위치를 반영	
5	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580-8	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신로 65	20190705	신축	20091113	창소리와 신례원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	
6	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580-8	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신로 67	20190705	신축	20091113	창소리와 신례원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	
7	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가지리 111-3	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가지1길 22-24	20190705	신축	20091113	지형이 가지처럼 생겨 유래된 자연마을이름 반영	
8	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궁리 79-3, 79-4	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구만상궁길 253-8	20190705	신축	20091113	구만리와 상궁리를 이어주는 도로로 행정구역을 이용하여 명명	
9	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금치리 177	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금치쇠재길 116	20190705	신축	20091113	행정구역(금치리)과 고유지명(쇠재)을 이용하여 명명	
10	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녹문리 166-6	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녹문박살미길 5	20190705	신축	20100315	행정구역명(녹문리)과 고유지명(박살미)을 이용하여 명명	
11	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마전리 32	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마전삼베실길 167	20190705	누락	20091113	행정구역명(마전리) 및 삼밭이 많다하여 붙여진 고유지명(삼베실)을 이용하여 명명	
12	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703-6	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150번길 16	20190705	신축	20091113	예산로 1,5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3	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중예리 429-1	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중예길 110	20190705	신축	20091113	행정구역명(중예리)을 이용하여 명명	

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세부내역

NO	변경 전 도로명주소	변경 후 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변경일	도로명주소 변경사유	비 고
1	대학로54	대학로54-3	20190705		체육관
2		대학로54-6			학생회관
3		대학로54-31			기숙사(금오사)
4		대학로54-33			기숙사(예지사)
5		대학로54-37			실습농장
6		대학로54-45			동물사육장
7		대학로54-46			기계공작실

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세부내역

NO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도로명주소 폐지사유	비 고
1	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101-4	20190705	건축물 멸실 및 재건축	
2	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150번길 16	20190705	건축물 멸실 및 재건축	

예산군 공고 제2019- 호

예산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및 예산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

「예산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」를 폐지하고 「예산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9년 월 일

예 산 군 수

1. 폐지 및 제정 이유

○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 및 제76조에 따라 「예산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」를 폐지하고 「예산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」을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제정 목적(안 제1조)
- 나. 위원회의 기능 설명(안 제2조)
- 다.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11조)
- 라. 위원회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(제12조)

3. 폐지조례(안) 및 규칙제정(안) : 붙임

4. 입법예고기간 : 2019. 4. 30. ~ 5. 20. (20일간)

5. 의견제출

○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(참조 : 예산군 안전관리과, 주소 :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22(8층), 우편번호 : 32435)에게 서면이나 메일(yujin4568@korea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.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안전관리과 복구지원팀

【☎(041)339-7773】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예산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

성명(단체명) :

주 소 :

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예산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

성명(단체명) :

주 소 :

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예산군 조례 제 호

예산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예산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예산군 조례 제 호

예산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제5조 및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예산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예산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
2.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
3.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
4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,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(이하 “본부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산군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
2.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4조(임기)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.

1. 공적·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
2.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이나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
3.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
4.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나 서면심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.

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.

제7조(심의의견 제출)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심의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현지조사)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안별 위원, 사업시행자, 사업승인기관,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위원의 공정검토 의무)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

심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,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으로 평가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 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, 위촉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10조(간사)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.

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.

1.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업무연락
2.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
3.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와 관리
4.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

제11조(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) ① 제6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.

1. 원안 통과 :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
2. 조건부 협의 :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
3. 재작성 :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

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.

1. 개·폐회 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명단
3. 위원의 검토의견
4. 회의 진행사항

5. 검토 결과

제12조(수당 등)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기술적 검토를 요하는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

「예산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」에 따라 심의·의결된 사항은 이 규칙에서 심의·의결된 것으로 본다.